

# 의장 보궐선거의 건

의안 번호	206
----------	-----

제의연월일 : 2021. 11. 22.

제 의 자 : 의장 직무대리 부의장

## 1. 제안내용

- 지방자치법 제53조(보궐선거)에 따라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함.
- 제17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「의장 불신임안」에 대한 「불신임안결의 취소 소송 (항소심)」의 법원판결이 인용될 경우, 선고일부터 이번 보궐선거의 효력은 무효로 함.

## 2. 관계법령

### 【지방자치법】

제53조(보궐선거)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
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